

2024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 공고문

1. 사업명: 2024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

2. 사업목적

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예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감염병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함.

3. 사업 규모 : 총 사업비 10억 원

구분	(분야 1) 감염보호공간 조성	(분야 2) 방역 서비스 및 물품 지원
기관당 지원규모	최소 5백 ~ 최대 3천	최소 1억 ~ 최대 3억

4. 지원분야

구분	항목	지원내용
분야 1	감염보호공간 조성1. 취약계층이 생활(거주)하는 시설 내 감염보호공간 조성2.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이 일시적으로 격리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	
분야 2	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	-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서비스 및 물품 지원

※ 중복신청 불가



분야 1 감염보호공간 조성

가. **사업기간**: 2024년 8월 ~ 2024년 12월 ※ 결과보고 기간 포함

나. 지원예산 : 기관당 최소 5백 ~ 3천만 원

다. 지원내용

- 감염병 발생 시 일시적으로 격리·대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
-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개보수, 공사, 물품 및 장비 구입

조성 기준	지원내용		
생활(거주)시설	· 취약계층이 생활(거주)하는 시설 내 감염보호공간		
(기구)시 ²	예) 아동양육시설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의 시설 내 공간		
지역사회	· 감염병 발생 시 지역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보호공간		
시크시외	예) 커뮤니티시설, 경로당 등 지역 내 유휴공간		

- ※ 단, 감염병을 예방·보호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
- ※ 신청기관이 평시에도 운영 및 관리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
- 라. 신청기관: 재해구호, 복지, 보건·의료, 교육, 문화,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·기관

마. 유의사항

- 사업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선정 (※ 단순 기능보강 사청 불가)
- 감염보호공간 유지 및 활용 서약서 제출(서식 3)
- 임차비 지원 불가
-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편성 불가
- 1회 회계감사 비용만 관리운영비 편성(기관 자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)
 - (분야 1) 1회 회계감사비용 편성 기준
 - 1천만원 이하 : 300.000원 이내
 -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이하 : 400,000원 이내



분야 2

방역서비스 및 물품 지원

가. 사업기간 : 2024년 8월 ~ <u>2025년 6월</u> ※ 결과보고 기간 포함

나. 지원예산 : 기관당 최소 1억 ~ 최대 3억 원

다.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방역 서비스 (필수)	· 바이러스, 세균·해충 예방을 위한 방역 서비스 지원
방역 물품 및 장비 (선택)	·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및 장비 지원
	예) 손 소독제, 공기청정(살균)기·체온계,에어커튼 등

※ 방역 서비스 필수 포함하여 신청

라. 서비스대상 : 감염 취약 가정 ·시설 ·지역 등 방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

마. 신청기관 (하기 조건 모두 충족)

- 1) 재해구호, 복지, 보건·의료, 교육, 문화,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·기관
- 2) 광역 범위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거점*으로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관 (개별 기관 신청 불가) ※ 거점: 총괄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리, 서비스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한 기관

바. 유의사항

- 서비스 대상이 많거나, 광역 범위가 넓은 기관 우선 선정
-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 진행할 수 있음
- <u>지원금은 2회 분할 지원</u>하며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
-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원신청 금액 대비 30% 미만 책정
 - ※ 단, 기존 인력 활용할 경우, '별도 수당'으로 인건비 지급 권장
- 최종 결과보고 1회 회계감사 비용만 관리운영비 편성(기관 자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)

• (분야 2) 1회 회계감사비용 편성 기준

- 1억원 이상 ~ 2억원 이하: 800,000원 이내 - 2억원 이상 ~ 3억원 이하: 900,000원 이내



5. 신청 제한 사항

-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중이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
-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
-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-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
- 그 밖에 협회에서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6. 예산 수립

- 예산편성기준표 참고하여 예산 수립(별첨1)
- 본 견적 금액에 기반하여 사업비 예산 수립

• 견적서 기준

- 1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·구매시 2곳 비교견적
- 1천만원 초과 3곳 비교견적
- 관리운영비 내 회계감사 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(기관 자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)
-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단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 불가

7. 신청방법

○ 구글폼에 신청정보 기입 및 파일 업로드



신청 링크: https://forms.gle/6f5ZLsbuKPacBEeK8

- ※ 제출 후 수정 불가하여 반드시 최종 파일 업로드
- ※ 모든 제출서류 **순서대로 1개 PDF 파일로 업로드**(200MB 이하)
- ※ 파일명: 기관명_신청서류



8. 제출서류

※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

구분	제출서류
	① 신청서 제출 공문
	②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서식 1)
	③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공통	④ 기관 신고·허가등록 관련 서류 - (예) 시설신고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※ 신고·허가등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기관은 법인설립허가증 & 법인등가등본 제출
	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(서식 2)
	⑥ 감염보호공간 유지 및 활용 서약서(서식 3)
	⑦ 임대인 공사승낙서 1부(서식 4)
분야 1	⑧ 임대차 계약서 1부
(해당 시)	⑨ 시설개보수 및 구매 물품·장비 견적서
	① 건물 도면 1부 -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
분야 2	⑪ 방역 서비스 및 구매 물품 견적서

- ※ 반드시 해당양식을 사용해야 하며, 자체 양식 사용 시 예비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됨.
- ※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
- ※ 반드시 필수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로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.
- 서류 파일 명:「기관명 신청서류 」→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서류

9. 진행일정

비고	일자	진행 내용	
	7. 2.	사업 공고	
	7. 2. ~ 7. 19.	서류 접수 기간	
₽E	7. 22 ~ 7. 31.	심사 진행	
공통	8. 5.	최종 발표	
	8. 5. ~ 8. 14.	조정사업계획 접수 및 배분계약 체결	
	8. 19.	지원금 교부	
분야 2	12. 16. ~ 12. 20.	중간 평가	
<u> </u>	12. 23 ~ 12. 26.	2차 지원금 교부	

※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

10. 심사 기준

- 사업 필요성, 사업수행능력, 예산편성의 합리성,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,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진행

11. 기타사항

- 분야 1(감염보호공간 조성)의 경우, 현장심사 및 모니터링 진행할 수 있음
-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 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선정기관은 사업비 지원 이전에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(자부담)
-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유의사항 등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**12. 문의 :** 사업팀 방역지원사업 담당자 070-5148-9113 / <u>yj3794@hopebridge.or.kr</u> ※ 부재 시 메일로 질의 남겨주시기 바라며,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

예산편성 기준표(* 항목별 최대 사용 가능 한도 금액)

항 목		기 준	최대 사용한도	비고
단순 인건비	• 1인/1일 (1일 8시간 기준)		• 88,880원 (중식비 10,000원 포함) • 주휴수당 78,880원	※ 2024년 최저임금 적용※ 월 60시간,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
	•시내여비(1인 1일)		• 10,000원	
출장 여비	시외 여비	교통비 (KTX 일반, 고속버스 등)	• 실비	* 시내여비 : 근무지로 부터 50km 이내 출장 시 지급(최단거리 기준) * 시외여비 : 근무지로 부터 50km 초과 출장 시 지급(최단거리 기준) * 주차요금 실비 정산
		일비(1인 1일)	• 30,000원 (업무차량 이용 시 50%)	
		식비(1인 1일)	• 30,000원	
		숙박비(1인 1실)	• 실비 (상한액 50,000원)	
식사비	• 1인 기준		• 15,000원	
다과비	•1인 기준		• 7,500원	* 주류, 담배 불가
자문비	• 관련 분야 전문 자격 소지자 또는 본 예산편성 강사비 2급강사 이상 기준에 준한 자 • 1인/1회 기준		• 200,000원	* 내부 직원 지급 불가 * 회의참석비와 중복지 급 불가
회계감사 비용 (필수편성)	총 사업 규모	1천만원 이하	총 30만 원 이내	* 1회 편성 기준
		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이하	총 40만 원 이내	
		1억원 이상 ~ 2억원 이하	총 80만 원 이내	
		2억원 이상 ~ 3억원 이하	총 90만원 이내	

[※]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 되지 않은 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예산 편성 가능

[※] 전담인건비는 신청기관 자체 규정에 따름